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 또는 공개된 정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 또는 방송매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기관 중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공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를 “제2조제1의2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전자우편주소
2.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의2가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제2조제3항을 제1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조제1호의2가목 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정보
2.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거나 동일한 신용정보주체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정보
3.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 제2조제1호의2가목1)부터 3)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④ 법 제2조제1호의2나목 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고유번호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⑤ 법 제2조제1호의2나목 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설립연월일

2. 팩시밀리번호

3.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의2나목 1)부터 5)까지 및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⑥ 법 제2조제1호의3가목 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

2.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출등

3.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호나목에 따른 대출

4. 「대부업법」 제6조에 따른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

5.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 또는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대출등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계대출

7.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의3가목 1)부터 3)까지 및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⑦ 법 제2조제1호의3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구성원 상호간에 체결한 공제계약의 종류, 기간, 공제료 등 공제계약에 관한 정보 및 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따른 보험계약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3. 다음 각 목의 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등에 관한 정보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 같은 법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재보증, 같은 법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보증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재보증, 같은 법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보증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보증

라.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른 무역보험 및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동보험 및 재보험,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입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마.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증

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4. 법 제2조제1호의3가목 각각의 거래에 관한 계약에 대한 청약 또는 승낙에 관한 정보

5. 법 제2조제1호의3가목 각각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 소멸한 사실 및 그 원인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의3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⑧ 법 제2조제1호의4나목 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파산·면책·복권에 관한 결정 또는 판결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의4나목 1)부터 4)까지 및 제1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⑨ 법 제2조제1호의4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이 항에서 “과점주주”라 한다) 중 최다출자자인 자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2.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4.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⑩ 법 제2조제1호의4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어음 또는 수표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⑪ 법 제2조제1호의5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
2.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3. 기업의 자산, 구매명세, 매출처 및 매입처, 재고자산 명세 및 입출내역,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연령

⑫ 법 제2조제1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
2. 「민법」에 따른 실종선고와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
3.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에 관한 정보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5.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보
6.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처분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⑬ 법 제2조제1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채납에 관한 정보
2.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채납에 관한 정보

⑭ 법 제2조제1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5.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정보 및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사실에 관한 정보
6.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의한 채무재조정 약정에 관한 정보

⑮ 법 제2조제1호의6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

는 것은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업종, 규모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⑯ 법 제2조제1호의6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6호의 기술평가를 말한다)를 하고 신용정보와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그 판단의 결과를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평점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 정보, 그 기술의 가액 또는 평가의견 등을 말한다.

⑰ 법 제2조제1호의6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약정,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한 정보
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및 부속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3.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5.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6.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판단에 이용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신용조회기록
 7.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관한
정보
 8. 「상훈법」 및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한 정보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9.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 같은 조 제1호의6 가
목부터 사목까지 및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제2조제4항을 제2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2조제8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기업신
용등급이나 기술신용정보를 말한다.
 - ② 법 제2조제8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거
래 등 상거래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에게 제
공하는 방법(공시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방법을 제외한다)
을 말한다.
 - ③ 법 제2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
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주체가 조
회·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㉔ 법 제2조제9호의2가목 부터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5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㉕ 법 제2조제9호의2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호의3가목3) 및 같은 호 같은 목4)의 신용정보로서 별표5에 해당하는 정보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2조에 제25항 및 제2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㉖ 제2조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㉔ 법 제2조제18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제3조 앞에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을 삽입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을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제23호 중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의 처리를 금지하는 것이 신용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2.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③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말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을 갖추는 것

가. 상시고용인력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3년 이상 개인신용평가업무(신용정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였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명 이상이 포함될 것

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추는 것

1의2. 법 제6조제2항제1호단서 가목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을 갖출 것

가. 상시고용인력에는 3년 이상 개인신용평가업무(신용정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였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포함될 것

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1의3. 법 제6조제2항제1호단서 나목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을 갖출 것

가. 상시고용인력에는 3년 이상 개인신용평가업무(신용정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였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이 포함될 것

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1의4.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을 갖출 것

가. 상시고용인력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3년 이상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무(신용정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였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명 이상이

포함될 것

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추는 것

1의5.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을 갖추는 것

가. 상시고용인력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3년 이상 기업정보제공업무(신용정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였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이 포함될 것

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추는 것

1의6.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을 갖추는 것

가. 상시고용인력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3년 이상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신용정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였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명 이상이 포함될 것

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추는 것

1의7.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을 갖출 것

가. 상시고용인력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3년 이상 기술신용평가업무 (신용정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였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명 이상이 포함 될 것

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1의8.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및 전문개인신용평가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을 갖출 것

가. 상시고용인력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3년 이상 기업정보제공업무 (신용정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였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5명 이상이 포함 될 것

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2.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하는 경우에는 20명 이 상의 상시고용인력을 갖출 것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 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 통신설비를 갖출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상의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 등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건전하게 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③ 법 제6조제1항제1의3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1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④ 법 제6조제2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를 각각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을 “(대주주 변경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란”을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

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령

③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 요건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제2조제3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5.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6.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7. 회사의 합병·분할에 대하여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가 된 자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항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주식의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 취득등을 한 날부터 1개월

3.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에 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주주가 된 날부터 1개월

제9조제8항(중전의 제4항)제1호 중 “국내”를 “신청인이 국내”로 하고, 같

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식취득대상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9조제8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을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서류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9항(중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을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으로, “이내에 그”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승인신청서에 흠”을 “변경승인신청서에 흠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7항) 중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를 “법 제9조제3항에 따라”로, “처분 대상”을 “처분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대주주가 되려고 신용정보회사등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신

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주식취득대상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취득계획

4. 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가. 정관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제표(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다. 나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2.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2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 보고서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또는 「은행법」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3.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⑩ 제9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변경승인신청서의 흠결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란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란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동일인(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③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과 신용정보회사등의 불법 거래 징후가 있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⑤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의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은행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3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법 제2조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마.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해당 기업을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이 충족하지 못하는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용 및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
2. 향후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가능 여부
3. 적격성 심사대상과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의 거래 관계

⑦ 법 제9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및 법 제9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의 주주 및 금융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2. 그 밖에 신용정보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⑧ 법 제9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적격성 심사대상의 법령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⑨ 법 제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이 해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5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최근 3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법 제2조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경우

⑩ 금융위원회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회사등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등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은 10영업일 이내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회사등: 해당 신용정보회사등 또는 그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인 법인 등의 주주명부,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2. 적격성 심사대상: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 사본,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⑪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 제목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를 “(신용정보업 등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겸영업무) ①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 전자문서중계 업무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
3. 금융 관련 법령 외의 법률에서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업무(전문개인신용평가업에 한한다)
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업무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사업(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한다)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화전문회사의 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한다)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한다)

4. 「발명진흥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발명의 분석·평가 업무

5.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업무

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7. 본인신용정보관리업

8. 금융 관련 법령 외의 법률에서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을 통해 운

영할 수 있는 업무(기업정보조회업자에 한한다)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11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1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
3. 신용정보업
4.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를 받아 영업 중인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허용된 고유·겸영·부대업무
5. 금융 관련 법령 외의 법률에서 본신용정보관리회사가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6.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업무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부수업무) ①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 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4.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
5.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된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6. 금융회사 등의 위탁에 따른 연체사실 등의 통지 대행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허가 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허가 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4. 사업체 및 사업장 현황조사
5. 기업 및 법인의 유동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6.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조사, 분석, 연구, 컨설팅, 자문, 리서치 및 통계자료의 생성
7. 공개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8. 기업신용평가에 활용된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기업정보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9. 개인신용평점 및 그 밖에 개인신용평가결과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 정보로서 사업체의 실제 경영자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기업정보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③ 법 제11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허가 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2. 허가 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④ 법 제11조의2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무와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무와 관련된 연구·조사 용역 및 상담업무

4.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1조의3(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2.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행정기관이 본인신용정보관리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마이데이터(MyData)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본문 중 “신용정보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항”을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12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12조의2(수집 및 처리의 원칙) ① 법 제15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때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말한다.

1.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대상 범위
2. 제1호로부터 추단되는 신용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목적
3.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정보 처리의 형태
4. 수집 목적이 신용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5.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여부
6. 개인정보의 성질 및 가치와 이를 활용하여야 할 사회·경제적 필요성

제1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회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로, “제5조제1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3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45조의3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과 제3자(이하 이 조에서 “결합의뢰기관”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에 따라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결합의뢰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정보집합물을 결합·제공·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결합의뢰기관이 정보집합물을 데이터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 제공할 것

가. 하나의 정보집합물과 다른 정보집합물간에서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 연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결합키”라 한다)로 대체할 것
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할 것

2. 결합의뢰기관이 결합키를 생성하는 절차와 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결합의뢰기관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것

3. 결합의뢰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을 제공하거나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집합물의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전달할 것

4.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기 전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것

5.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하여 전달할 것

6.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한 후

결합한 정보집합물 및 결합전 정보집합물을 지체없이 삭제할 것

④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결합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의뢰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정보집합물 결합·제공·처리·보관의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앞에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를 삽입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조회회사”를 각각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로, ““신용정보회사등””을 ““신용정보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2조제1항제3호”를 각각 “법 제2조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을 “법 제2조제1호의6”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제1항제5호나목 및 다목”을 “법 제2조제1호의6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조제1항제5호라목”을 “법 제2조제1항제1호의6아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제18조제2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소멸시효완성, 채무 면제 등 거래 종료 사유를 등록하기 위한 경우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④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신용정보의 관리·보호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3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⑦ 법 제20조 제6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2.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제14호 및 제17호, 제19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3. 제21조제2항제4호, 제5호, 제8호, 제16호 부터 제18호, 제19호(전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한한다), 제22호 및 제23호의 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⑧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이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법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명처리한 자가 가명처리시 정한 기간을 말한다.

1. 추가정보 및 가명정보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수준
2. 가명정보의 재식별시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3.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4. 가명정보의 이용목적 및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

제17조의2제4항(중전의 제3항)제3호 전단 중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을 “신용정보주체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상 개인신용정보 삭제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성, 보안성 등을 해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

제18조 앞에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삽입한다.

제18조 앞에 “제1절 신용정보업”을 삽입한다.

제18조의 제목 “(신용조회업 종사자의 결격요건)”을 “(신용조사업 종사자의 결격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 제7호”를 “법 제22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신용조회회사”를 각각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신용평점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자의 개인신용평점을 그 외의 자의 개인신용평점에 비하여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 취급행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신용평점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자의 개인신용평점을 그 외의 자의 개인신용평점에 비하여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 취급행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8조의4(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법 제22조의5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용평가 결과를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자의 신용평가결과를 그 외의 자의 신용평가결과에 비하여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 취급행위
3. 개인사업자신용평가정보 또는 그에 활용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
4.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5.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6.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 등을 활용하여 유·무선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의5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신용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

2.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제한사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4. 이해상충의 파악·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신용정보업과 겸영업무 간 이해상충 행위 방지, 신용정보업과 겸영업무 담당 부서간 인적분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8조의5(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① 법 제22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에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2.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가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3.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하여 100분의 40 이상 출자한 법인
5. 그 밖에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22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신용평가 결과를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자의 기업신용평가결과를 그 외의 자의 기업신용평가결과에 비하여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 취급행위
3. 법 제22조의6 제1항제1호 또는 2호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업신용조회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다른 기업신용조회회사 간에 교차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4. 기업신용평가정보 또는 그에 활용된 정보 및 기업신용정보 등을 제
공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
 5.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
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6. 기업신용조회업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
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7.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또는 특정 신용평가결과가 부여될 가능성 또
는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보를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8. 신용평가계약의 체결을 유인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9. 의뢰자에 홍보자료, 유선·방문설명 등을 통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10. 신용평가계약에 따른 대가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
 11. 은행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한 기술평가자의 직접적인 영업행위
 12. 기술평가자 대상 실적평가 등에 평가유치 실적 및 은행 방문 등의
영업요소를 포함하는 행위
 1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③ 법 제22조의6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신용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

2.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나. 불공정 행위, 금지 및 제한사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4. 이해상충의 파악·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신용정보업과 겸영업무 간 이해상충 행위 방지, 신용정보업과 겸영업무 담당 부서간 분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2조의6제4항에 따른 이용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장 제2절(제1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법 제22조의9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 대하여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강요하

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보다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법 제39조의3 제1항의 권리에 대한 대리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4.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의 변경 및 철회의 방법을 최초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5.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철회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위약금 등 금전적,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행위
8.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
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보유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삭제 방법을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10.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한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11.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
위

② 법 제22조의9제2항에의 내부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2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법 제22
조의9제3항 각 호의 수단이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위임·대리·대행·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용
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2조의9제3항 각 호의 수단이나 정보(이하 “접근매체”라 한다)
를 직접 보관하는 방법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접근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
는 방법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접근매체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
는 접근권 등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 부터 제21호의 자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예탁
결제원
 4.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7.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9.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⑤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
2. 국세청
3. 관세청
4. 고용노동부
5. 보건복지부
6. 조달청
7. 공무원연금공단
8. 주택도시공사
9. 주택금융공사
10. 근로복지공단

11. 신용회복위원회

1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1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4.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1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⑥ 법 제22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로써 신용정보회사등이 본인확인을 위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⑦ 법 제22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제2항에 따른 방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방식을 말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 사이에 미리 정한 방식

2.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 받는자가 상호 식별·인증할 수 있는 방식

3.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 받는자가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

4. 정보 전송시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방식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⑧ 법 제22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 규모, 관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수, 시장 점유율, 외부 전산시스템 이용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22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중앙기록관리기관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⑩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 받은 신용정보내역에 관한 기록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의9 제5항에 따라 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중계기관이 기록 작성의무를 진다.)

⑪ 법 제22조의9제7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은 이동권 행사대상
개인신용정보의 특성 및 처리비용, 요청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및 양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앞에 “제3절 공공정보의 이용·제공”을 삽입한다.

제19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인증·인가
· 인정·지정·등록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제19조제5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제5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인신용평가회사

4.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5. 기업신용조사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사회사는
제외한다)

제20조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 앞에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을 삽입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5조제1항제1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5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대부업자등”을 “대부업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대부업 범위에서 제외된 상법상 주식회사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2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27.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2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21조제5항제1호라목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제5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라. 기업신용조회회사

제2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한 정보로 제공하는 업무

제21조의2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신용정보주체가 동의내역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 2의3. 신용정보주체 식별,전송요구 권리행사 현황 관리, 영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등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법 제22조의9 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을 포함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5조의2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의 업무

2. 이 영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업무

3. 그 밖에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신용평가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 관련 민원처리 분석결과 등에 관한 심의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6조의3제5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경영학·경제학·통계학 또는 법학 등을 전공하고 신용평가·개인정보 보호·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신용평가·개인정보 보호·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신용평가·개인정보 보호·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을 제외한 검증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심의를 반기별로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
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은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위원회는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위
원회에 제출하고, 지체없이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결과의 제출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4(데이터전문기관) ① 법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정보집합물간의 결합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대한 조사·연구
및 이와 유사한 업무

2. 정보집합물간의 결합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전문기관간 업무 표준화 등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적정성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2. 신용정보회사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데이터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26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말한다.

1. 법 제26조4제4항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을 갖춘 위험관리체계

가. 법 제2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아니할 것. 다만, 부서장·상무·이사·대표자 등 업무의 집행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26조의4제4항제2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을 갖춘 위험관리체계가

가. 법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전문기관업무”라 한다)

를 수행하는 직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다른 업무(이하

“다른 업무”라 한다)를 동시에 수행하지 아니할 것. 다만, 부서장

· 상무 · 이사 · 대표자 등 업무의 집행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문기관업무를 수행하는 서버와 다른업무를 수행하는 서버를

별도로 분리할 것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는 것

⑤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호에 따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⑥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매출액 등 요건을 갖춘
법인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설비 및 인력·조직, 재정능
력을 갖추는 것

3. 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신용정보주체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의4 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
한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데이터전문기관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조건의 내용

⑧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재지정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의 유효기간 중이
라도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해산·폐업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0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⑩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은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데이터전문기관의 운영권 또는 영업을 양도·양수하거나, 지분을 양도·양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금융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2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27조 앞에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삽입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3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제1항제1호”를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2. 제1항에 따른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자.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제2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
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28조제7항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
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회사등이”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용정보회사등과”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로, “신용정보회사
등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로, “신용정보회사등과”를 “신용정
보제공·이용자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신용정보회사등이”를 “신
용정보제공·이용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2호 중 “신용조회회사”
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를 “위하여 개인신용평
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
4호 중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을 “제2조제9항 각 호”로, 같은 호 및

제5호 중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를 각각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 “제공하거나 신용조회회사”를 “제공하거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한다.

⑫ 법 제32조제6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 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2.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게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3. 「상법」 제726조의2의자동차보험계약의 제3자의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제2항제1호 부터 제20호의 자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9의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별표5에 따른 정보

2.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3.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공적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4. 제18조의6제4항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료 납부정보 등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5. 그 밖에 제1호부터 4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정보

④ 법 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2. 「관세법」 제116조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4. 「전자정부법」 제42조
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7. 「외국환거래법」 제21조
8.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법률의 관련 규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

⑤ 법 제3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33조의2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법률의 관련 규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

⑦ 법 제33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하였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에 의하여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법 제33조의2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경우
5.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정지·중단한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들은 지체없이 해당사실을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하거나 약정하여 해당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한 경우 또는 비대면 정보 조회를 금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대면으로 전송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⑩ 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들은 전송요구

를 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제공(다만, 최근 5년 내의 신용정보가 아닌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정한 별도의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⑪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철회, 거절, 중지 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⑫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와 관련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4(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 전송요구의 운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의9제7항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33조의2제9항에 따른 전송요구에 관한 사항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는 협의회, 기관 등을 둘 수 있다.

1.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개인신용정보 규격 표준화, 검증 및 오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전송요구에 따른 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3.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의9제4항 및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성

이 보장된 방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개인신용정보 전송·관리를 위한 신용정보주체 등의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6.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관리를 위한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기관 등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
원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란 법 제2조제1호의2 가목의 정보를 말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① 법 제34조의
2제1항에서 “동의 방식이나 개인신용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화 등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자 전화번호 등 동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②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란 제17조제6항제2호 부터 제4호의 자를 말한다.
 - ③ 법 제34조의2제3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제1호 부터 제4호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3항 제1호 부터 제4호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2.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고지사항 전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3. 선택적 정보활용 동의 사항의 경우,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부여 받은 정보활용 동의 등급

④ 법 제34조의2제3항단서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⑤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축소하여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① 법 제34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2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사항
2. 제5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4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글자 크기, 줄 간격 등을 확대하는 등 정보주체가 읽기 쉽게 표기하였는지 여부
2.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한 사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34조의3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의 등급 기준 변경,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사항의 변경 등 기존에 부여한 정보활용 동의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신용정보주체 보호나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의 측면에서 불합리한 경우
2. 해당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해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3. 부여된 등급을 미표시, 왜곡 등 신용정보주체가 쉽게 인지하기 어렵도록 한 경우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의 선택적 동의 사항에 대해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정보활용 동의 등급 부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⑦ 금융위원회는 정보활용 동의 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급박한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5항 및 7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취소, 변경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다목) 중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를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3호”로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라목) 중 “제21조제2항제1호”를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마. 기업신용조회회사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① 법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법 제2조제1호의3가목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종류
2.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여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3.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4. 그 밖에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0조의3(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 기업 및 법인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3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2.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일정기간 그 기록이 보관된다는 사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면

2. 전화

3. 전자우편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비슷한 방법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기에 적합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제31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제3호”를 “법 제2조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신용조회회사”를 각각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2. 법 제2조제1의6호 각 목의 신용정보. 이 경우 같은 호 라목, 마목, 사목의 신용정보는 제외하며, 아목에 신용정보는 제2조제17항제3호 (채납관련 정보에 한한다.) 및 제5호, 제6호의 정보에 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의3가목 각각의 거래

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③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나목괄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말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2항 각호의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 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⑤ 법 제36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⑥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⑦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정정·삭제 등 필요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⑧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설명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가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요구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자동화평가의 결과로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 자체적으로 정한 신용등급 또는 점수(백분율을 포함한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나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 자동화평가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별(신용거래 판단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등) 반영 비중을 안내하거나 또는 각 금융권역 협회에서 마련한 양식에 따라 안내할 수 있다.
3.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다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 제4조에 따라 설명을 요구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 신용정보원 및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금융회사 등이 직접 입수한 신용정보를 안내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기초정보를 자체적으로 가공하여 생성 또는 추론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⑨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한 경우 거절의 근거 및 판단근거를 서면, 전자우

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3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범위에 속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⑤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5항단서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내용
3.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⑥ 법 제38조제6항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신용조회회사의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을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

에 대한 통지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로, ““정보제공의뢰자””를 ““정보제공의뢰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본문 중 “신용조회회사”를 각각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란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제1항 제2호다목의 정보(자동화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34조의2를 제34조의4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34조의2) 제1항 중 “법 제39조의2제1항”을 “법 제39조의4제1항”으로, “신용정보가”를 “개인신용정보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2제3항”을 “법 제39조의4제3항”으로, “신용정보가”를 “개인신용정보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신용정보 누설”을 “개인신용정보 누설”로, “법 제39조의2제2항”을 “법 제39조의4제2항”으로, “신용정보의”를 “개인신용정보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란을 “법 제39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란”으로 한다.

제34조의4(중전의 제34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39조의2제3항”을 “법 제39조의4제3항”으로, “신용정보회사등”을 “신용정보회사등(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9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4항에 따른 보호위원회등을 말한다.

⑧ 법 제39조의4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34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의3호가목 에 따른 거래로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채무자가 되는 거래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의 취득·양도·양수 사실에 관한 정보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기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④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채권자변동정보를 제25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활용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집중관리정보”라 한다)와 분리보관하기 위해 채권자변동정보와 집중관리정보의 관리 기준, 접근 권한, 저장 공간 등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보관 기준 및 접근권한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채권자변동정보의 제공 및 열람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채권자변동정보의 축적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채권자변동정보 교부·열람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의4(중전의 제34조의2)의 제목 “(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을 “(개인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으로 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법 제39조의3제1항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란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메신저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및 기간을 포함하여 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통해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파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 접근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4. 가명처리전 개인신용정보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의 분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32조제6항9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적 외 활용 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의2제5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기관명, 기간, 위탁하는 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전체 매출액”이란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제35조의3제6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법 제45

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35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3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로, ““과징금납부의무자””를 ““과징금납부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3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35조의8제1항 중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한다.

제35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채권추심회사

2의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교육 및 출판업무(관련 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

4. 신용정보 관련 산업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표준 교재 제작 업무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감독·검사 등)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제36조의3(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① 법 제45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4(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조사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신용정보누설 등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를 말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의5(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①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영 제17조제6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출받은 점검의 결과에 대한 내용 중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사항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점수 또는 등급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안전성 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인증마크의 부여를 위한 기준 등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의5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7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업무를 신용정보협회에”를 “금융감독원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2항) 중 “신용정보협회는 제1항”을 “신용정보협회, 금융보안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제1항 부터 제5항”으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업무를 신용정보협회에 위탁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실태 점검 결과의 접수

2. 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점검 결과의 제출의 확인 및 그 결과의 점수 또는 등급 표시 및 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그 결과의 송부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의 공개

2. 법 제34조의3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및 취소·변경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의2제3항의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 및 법 제40조의2제4항의 익명처리의 적정성 인정업무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 및 법 제39조의4제4항에 따른 보호위원회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배주주”를 “대주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38조제4항·제5항·제7항”을 “법 제38조제5항·제6항·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8호의4 및 제8호의5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에 따른 사무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11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 사무

6의2.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에 따른 사무

8의2. 법 제39조의4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처리에 관한 사무

8의3.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심사 및 인정업무에 관한 사무

10. 법 제4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45조의3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조사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45조의4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45조의5에 따른 상시평가제에 관한 사무

제3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을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겸업 업무”를 “겸영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1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사무

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통합

하여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식별번호를 법 제22조의9제4항 및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여 그 개인의 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 중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가 부과·징수하는”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대주주의 요건(제6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관련)

구분	요건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거나, 그 사실이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기금등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내국법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는 개인인 경우	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	가.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의 지주회사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

	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6. 대주주가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주식 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승인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이 있을 것 라. 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7.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 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나목의 요건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4호가목의 요건

	마. 제5호의 외국 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5호나목
	· 다목의 요건
	바. 제6호의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6호나목의 요건

비고

1. 위 표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표 제1호다목 또는 제5호다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구이거나 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이 표 제7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다.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3. 이 표 제5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이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면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제21조제3항 관련)

1. 개인

구분	집중관리·활용 대상 정보	
가. 식별정보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나. 신용거래정보	1) 대출·당좌거래 등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정보	및 대출 약정의 이행 현황을 포함한다)
	가) 대출 현황(신청, 심사 사실	나)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의 개설 및 해지 사실

	다) 담보 및 채무보증 현황 2) 신용카드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정보 가) 신용카드의 발급·해지 사실 및 <u>이용</u>·결제·미결제 금액 나) 2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카드 이용금액, 이용한도,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한도 다)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 사고발생, 그 발생한 사고종결에 따른 보상, 그 밖의 사고종결의 처리 사실 3) 보험상품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 가) 및 나)의 구분에 따른 정보.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업,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도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또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등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보험상품을 포함한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정보: 보험계약 현황,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 관한 정보(성명, 개인식별번호, 직업 및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및 해당 보험계약을 모집한 모집업무수탁자에 관한 정보 나)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보험금의 청구·지급 현황, 보험금의 지급 사유(질병에 관한 정보, 손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사실, 그 밖의 보험사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보험금청구권자(책임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를 보상받는 피해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성명, 개인식별번호, 피보험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 신용도판단정보 등	1)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시설대여 이용료 등의 연체 사실 2) 대위변제·대지급 발생 사실 3) 어음·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및 그 부도 사실 4) 증권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가) 및 나)의 정보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용자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 거래에 관한 정보로서 상환 또는 납입기일

	까지 그 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5) 금융질서 문란 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정보 가) 대출금 등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사실 다) 보험사기 사실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의 사실과 비슷한 것으로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6) <u>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u>로써 <u>개인의 소득 총액과 관련된 정보(직장/직업정보, 연소득정보, 연소득추정정보 및 주거형태 등)</u> 7) 공공기관이 만들어 낸 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마)까지의	정보 가)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 <u>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결정</u> 사실 나)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가채권과 벌금·과태료·과징금·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다)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라)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	---	---

2. 기업 및 법인

구분	집중관리·활용 대상 정보	
가. 식별정보	기업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본점·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 종목, 대표자의 성명·개인식별번호	
나. 신용거래정보	1) 대출·당좌거래 등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사)까지의 정보 가)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	여 현황 나) 시설대여 현황 다) 신용보증 현황 라) 보증보험 현황

	마) 담보(동산 담보 포함) 및 채무보증 현황 바)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의 개설 및 해지 사실 사) 가)부터 바)까지의 정보로서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만들어진 정보	2) 신용카드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 가) 및 나)의 정보 가) 신용카드의 발급·해지 사실 및 <u>이용</u>·결제·미결제 금액 나)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 사고발생, 그 발생한 사고종결에 따른 보상, 그 밖의 사고종결의 처리 사실
다. 신용도판단정보(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정보도 포함한다)	1) 기업 및 법인의 신용도 판단 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바)까지의 정보 가) 대출금, 신용카드 자금, 시설대여 이용료 등의 연체 사실 나) 대위변제·대지급 발생 사실 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사실 라) 어음·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및 그 부도 사실 마) 무보증사채의 상환불이행 사실 바) 가)부터 마)까지의 정보로서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진 대출, 신용보증 등에 대하여 연체, 대위변제 등이 발생한 사실 2) 증권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가) 및 나)의 정보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용자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 거래에 관한 정보로서 상환 또는 납입기일까지 그 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3) 금융질서 문란 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정보 가) 대출금 등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사실 다) 보험사기 사실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의 사실과 비슷한 것으로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4) 공공기관이 만들어 낸 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마)까지의 정보 가)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 사실 나)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가채권과 벌금·과태료·과징금·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다)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라)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라.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등	1) 계열기업체 현황 등 회사의 개황 2) 사업의 내용 3)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증자 및 사채 발행 현황 5)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가) 및 나)의 정보	가)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 나) 기술신용정보 및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 6)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7조 제1항 관련)

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 신청의 접수

1의2. <삭 제>

2.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받은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수리 또는 보고의 접수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3의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자격심사의 심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의 양도·양수·분할·합병 인가 신청의 접수
5.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에 관한 신고의 수리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 신청의 접수 및 수리
- 6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신청의 접수 및 수리
7. 법 제13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승인 신청의 접수
8. <삭 제>
- 8의2. <삭 제>
- 8의3. 법 제22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보고의 접수(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포함한다)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신청의 접수
10.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 보고의 접수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변경 권고
11. 법 제26조의3 제3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의 보고의 접수
12. 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제공 대상 신용정보의 범위 등에 대한 승인 신청의 접수
13.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처리결과에 대한 시정 요청의 접수
14.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15. 법 제38조제8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 15의2. 법 제39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 15의3. 법 제39조의4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시정 요구
- 15의4.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보고의 접수
- 15의5. 제35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1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감독
17. 법 제46조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가. 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미리 신고하지 않거나 같은 조 단서를 위반하여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5항제1호	1,000
나.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호	5,000
다.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호	5,000
라.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업 중단 또는 폐업을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4항	1,000
마.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업을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5항제2호	1,000
바.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수업무를 한 경우	법 제52조 제5항제2의2	1,000
사.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5항제2의3	1,000
아.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52조 제5항제2의4	1,000
자.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	법 제52조 제2항제1호	3,0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

용정보·신용조사·개인신용평가·신용관리·마이데이터(MyData)·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의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한다.
차.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5항 제2호	1,000
카.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 제2호	4,000
타.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 제1호	2,400
파.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하지 않거나 위탁 계약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5항 제4호	800
하. 법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재위탁한 경우	법 제52조 제4항	1,600
거.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전달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 제2의2	4,000
너.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변경 및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5항 제5호	1,000
더.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 제3호	4,000
러.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 제3호	4,000
머.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 제2호	2,000
버.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임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 제2의2	2,400
서.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 제4호	3,000
어. 법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하	법 제52조	1,000

지 않은 경우	제5항 제6호	
저. 법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 제3호	2,400
처. 법 제2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5항 제6호	800
커.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처분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 제4호	2,400
터. 법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5항 제7호	800
퍼.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 제4의2	2,000
허.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 제4의3	2,000
고.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 제4의4	2,000
노.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 제4의5	2,000
도.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 제4의6	1,800
로.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 제4의7	2,000
모.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 제4의8	1,800
보.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5항 제7의2	600
소.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 제4의9	2,000
오. 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 제4의10	1,800
조.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 제4의2	4,000
초.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	법 제52조	4,000

보를 전송한 경우	제2항제4의3	
코.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5호	2,400
토. 법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5항제8호	600
포.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법 제27조 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2조 제2항제4호의4	4,000
호.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법 제27조 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2조 제3항제5호의2	2,400
구.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5항제9호	800
누.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2조 제5항제10호	800
두.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구분하여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2조 제2항제5호	3,000
루.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2조 제2항제5호	800
무. 법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2조 제2항제5호	3,000

부. 법 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알리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경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2조 제5항제10호	800
수. 법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2조 제3항제6호	2,000
우. 법 제32조제9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분리관리하지 않은 경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2조 제3항제6호	1,000
주. 법 제32조제10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2조 제5항제10호	800
추.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6의2	3,000
쿠.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6의3	2,400
투. 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6의4	2,400
푸.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6의5	1,200
후.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5항제11호	800
그.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5항제11호	800
느.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5항제11의2	800
드.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2,400

	제3항제6의6	
르.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 또는 중지한 근거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7호	2,000
므.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 우	법 제52조 제3항제7의2	2,400
브. 법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나 사후고지를 하 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8호	2,000
스.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9호	2,400
으.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 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2조 제3항제7호 또는 제9호	2,000
즈.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처리결과를 알리지 않 은 경우(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법 제52조 제3항제7호 또는 제9호	800
츠. 법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9호	2,400
크. 법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 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법 제52조 제3항제7호 또는 제9호	1,000
트.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을 중지하 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10호	2,000
프.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의 중지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10호	800
호. 법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삭 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11호	2,400
가. 법 제3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11호	1,000
냐. 법 제3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11호	800
다.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무료로 제공하거나 열람토	법 제52조	2,000

록 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12호	
라.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5호의2	4,000
마. 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13호	2,400
바. 법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14호	2,400
사. 법 제40조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15호	2,400
야.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16호	2,400
자.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16호	1,000
차.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17호	2,400
카. 제4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18호	2,400
타.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5항제11의3	800
파. 법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6호	3,000
하. 법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5항제12호	1,000
거. 법인인 자가 법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7호	5,000
너.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 및 요구	법 제52조 제2항제7호	2,500 다만, 임직원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의 경우에는 1,000만원으 로 한다.
다.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8호	3,000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5] 전송요구권의 행사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제2조9호의2 각 호 관련)

구분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가. 제1호의3가목1)·2)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 계좌 정보 가. 고객정보 (최초개설일, 인터넷뱅킹 가입여부, 스마트뱅킹 가입여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나. 계좌자산 정보 (기준일자, 계좌종류, 현재잔액, 통화코드, 최종거래일, 거래일시, 거래금액, 거래후잔액, 기본금리, 이자지급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다. 그 밖에 유사한 정보 2) 대출 정보 가. 일반 대출현황정보 (대출종류, 대출계좌정보, 대출원금, 대출한도, 대출기준금리, 월상환액, 대출잔액, 대출자산 거래내역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나. 카드 대출현황정보 (리볼빙 이용여부, 월별 리볼빙 이용내역, 단기대출 이용금액, 결제예정일, 이자율, 장기대출 종류, 대출일자, 대출금액, 이자율, 만기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다. 금융투자 대출현황정보(법 제2조제1의3호 가 목 3) 관련) (대출형태, 대출금계좌번호, 상환계좌번호, 대출잔액, 이자, 대출만기일, 대출 상환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라. 그 밖에 유사한 정보 3) 카드 정보 가. 카드 상품정보 (카드사명, 카드상품명, 교통기능, 결제은행, 국제브랜드, 상품연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나. 카드 고객정보 (본인/가족구분, 카드번호(마스킹), 발급일자, 신용/체크구분, 결제일, 결제예정금액, 포인트종류,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다. 카드 이용정보 (카드명, 사용일시, 사용구분, 결제예정일, 결제예정금액, 할부회차, 할부결제 후 잔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라. 그 밖에 유사한 정보
나. 제1호의3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 보험정보 가. 보험 계약정보 (계약자명, 보험사, 계약일자, 만기일자, 변액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특약관련 정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나. 보험료 납입정보 (납입기간, 납입종료일자, 월납 보험료, 최종납입월, 최종납입숫자, 최종납입횟수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다. 보험료 납입내역 (납입 금융기관, 납입일자, 총 납입보험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라. 그 밖에 유사한 정보
다. 제1호의3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 금융투자 상품정보 가. 상품 기본정보

로 정하는 정보	(상품종류, 상품명, 계좌번호, 세제혜택여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나. 상품 자산정보 (매입방법, 매입금액, 보유수량, 매도가능수량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다. 상품 거래내역 (거래종류, 거래수량, 거래단가, 거래금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라. 체결내역 (종목코드, 주문수량, 주문단가, 체결수량, 체결단가, 체결구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마. 그 밖에 유사한 정보
라. 제1호의3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 증권계좌 정보 가. 고객정보 (자동이체 설정금액/설정기간/날짜/입금계좌/출금계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나. 계좌정보, 계좌자산정보 (증권사명, 계좌종류, 계좌번호, 계좌상태, 계좌개설일, 세제혜택여부, 예수금, 매입금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다. 계좌 거래내역 (거래일시, 거래종류, 거래후잔액, 종목명, 거래수량, 거래단가, 거래금액, 상대방명, 상대방계좌번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라. 그 밖에 유사한 정보 2) 연금상품 정보 가. 상품정보 (연금종류, 상품명, 가입일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나. 연금 납입정보 (납부총액, 기출금액, 최종납입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정보) 다. 연금 수령정보 (연금 기수령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라. 그 밖에 유사한 정보
마.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 보험 대출정보 가. 보험 대출현황정보 (대출형태, 총원금상환금액, 대출원금, 현재대출잔액, 계좌상태, 신규일자, 만기일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나. 대출 상환내역 (상환일자, 회차별 원금상환금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다. 그 밖에 유사한 정보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6조의5, 별표4 및 별표5(법 제52조제3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 : 2021년 2월 4일
2. 제18조의6제3항, 제6항, 제7항 별표4 및 별표5(법 제52조제2항제4호의2·제4호의3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 : 2021년 8월 4일

② 법 부칙 제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1년 2

월 4일을 말한다.

③ 법 부칙 제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1년 8월 4일을 말한다.

제2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법 제20조제3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행한 업무내용의 보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거래에 관하여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생하여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정보 중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9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43조의3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신용정보회사등에 등록·관리되어 있는 신용정보로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불이익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또는 공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통지 또는 공시는 제28조제9항 또는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공시로 본다.

제10조(무료 열람권의 기준일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인신용평가회사로부터 본인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별표4 및 별표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5조의3 및 별표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제7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⑦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⑧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6항제4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⑪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9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⑫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5호라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8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⑮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⑯ 기초연금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⑱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⑲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3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1호나목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업을 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제공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1항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제3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㉖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㉗ 보험업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6호 중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수행하는 신용정보업무”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5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㉖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㉗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㉘ 암관리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7제3항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의5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제17조제2항제6호 중 “개인신용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9조의24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으로 한다.

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㉕ 은행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에서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㉖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118조의18제3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다른 기술신용정보

제3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조회업무(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조회업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용조회업무”를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신용조회회사”를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제324조의3제1항제2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325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③⑥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③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㉖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㉗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과목의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④③ 주거급여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④ 주민등록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 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⑦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제25조제3항 중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④⑧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7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5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⑪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⑫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35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㉖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조(정의)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 또는 공개된 정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 또는 방송매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기관 중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공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등	<u>제1장 총칙</u> 제2조(정의)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u>전자우편주소</u>

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인식별번호(제29조 각 호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성별, 국적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와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본점·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종목, 대표자의 성명·개인식별번호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대출자자인 자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대출자자인 자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삭 제>

<삭 제>

<삭 제>

라. 해당 기업의 무한책임사
원

<삭 제>

4. 법 제2조제1호라목의 신용정
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
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
을 판단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
보

<삭 제>

가. 개인의 직업·재산·채무
·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
적

나. 기업 및 법인의 연혁·목
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概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
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
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
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
인(「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u>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의 견 및 납세실적</u>	
5. <u>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u>	<u><삭 제></u>
<u>가. 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 견·특정후견과 관련된 심 판, 실종선고와 관련된 심 판, 회생·간이회생·개인 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 선고·면책·복권과 관련 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 부의 등재·말소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 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 정에 관한 정보</u>	<u><삭 제></u>
<u>나.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체납 관련 정 보</u>	<u><삭 제></u>
<u>다. 벌금·과태료·과징금 또 는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u>	<u><삭 제></u>
<u>라.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 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u>	<u><삭 제></u>
<u>마.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u>	<u><삭 제></u>

<u>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u>	
<u>바.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 보로서 출생·사망·이민 · 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 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 에 관한 정보</u>	<u><삭 제></u>
<u>사.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 양수, 분할·합병, 주식 또 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 보</u>	<u><삭 제></u>
<u>아.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 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 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u>	<u><삭 제></u>
<u>자.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 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u>	<u><삭 제></u>
<u>차.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가 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u>	<u><삭 제></u>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
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
른 정보와 비슷한 정보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카.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인
경우 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
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
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
른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삭 제>

타. 신용정보주체가 기업 및
법인인 경우 그 신용을 판
단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
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에 따른 정보를 활용함으
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정보

<삭 제>

파. 신용정보주체가 기업 및

<삭 제>

법인인 경우 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해당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기술신용정보"라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② 법 제2조제1호의2가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③ 법 제2조제1호의2가목 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정보

2.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거나 동일한 신용정보주체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정보

3.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 제2

<신 설>

<신 설>

조제1호의2가목1)부터 3)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④ 법 제2조제1호의2나목 5)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
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
항제2호단서에 따른 고유번호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정보

⑤ 법 제2조제1호의2나목 6)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설립연월일

2. 팩시밀리번호

3.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의2나
목 1)부터 5)까지 및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 설>

<신 설>

정보

⑥ 법 제2조제1호의3가목 4)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
6호에 따른 신용공여

2.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
5호에 따른 대출등

3.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
호나목에 따른 대출

4. 「대부업법」 제6조에 따른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

5.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 또는 같은 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
출등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계대출

7.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의3가
목 1)부터 3)까지 및 제1호부
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정보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정보

⑦ 법 제2조제1호의3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구성원 상호간에 체결한 공제계약의 종류, 기간, 공제료 등 공제계약에 관한 정보 및 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 · 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따른 보험계약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3. 다음 각 목의 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등에 관한 정보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 같
은 법 같은 조 제7호에 따
른 재보증, 같은 법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동화회
사보증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보증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재보증, 같은 법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유동화회
사보증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보
증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9
호에 따른 재보증

라.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른 무역보험 및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동보험
및 재보험, 같은 법 제5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
용보증 및 수출입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마. 「주택도시기금법」 제26
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신 설>

따른 보증

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4. 법 제2조제1호의3가목 각각
의 거래에 관한 계약에 대한
청약 또는 승낙에 관한 정보

5. 법 제2조제1호의3가목 각각
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
권이 소멸한 사실 및 그 원인
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의3가
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1호부
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정보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정보

⑧ 법 제2조제1호의4나목 5)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회생절차·간이회생절
차·개인회생절차·파산·면
책·복권에 관한 결정 또는
판결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
보

2.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의4나

<신 설>

목 1)부터 4)까지 및 제1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⑨ 법 제2조제1호의4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이 항에서 “과점주주”라 한다) 중 최다출자자인 자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2.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4.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신 설>

<신 설>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⑩ 법 제2조제1호의4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어음 또는 수표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⑪ 법 제2조제1호의5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

2.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3. 기업의 자산, 구매명세, 매출처 및 매입처, 재고자산 명세 및 입출내역,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연령

<신 설>

⑫ 법 제2조제1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
한정후견·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
2. 「민법」에 따른 실종선고와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
3.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
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에 관한 정보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5.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
에 대한 정보
6.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
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중
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처분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정보

<신 설>

<신 설>

⑬ 법 제2조제1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
가채권의 채납에 관한 정보
2.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채납에 관한 정
보

⑭ 법 제2조제1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
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
정에 관한 정보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파산·면책
·복권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에 관한 정보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5.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
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 협약

<신 설>

<신 설>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정보 및 채무조정 약
정을 체결한 사실에 관한 정
보

6.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
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
원과 관련된 규정에 의한 채
무재조정 약정에 관한 정보

⑮ 법 제2조제1호의6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
·사업성 등을 업종, 규모 등 일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거
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 정보
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평가하
는 것을 말한다.

⑯ 법 제2조제1호의6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평
가(「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제1항제6호의 기술평가를 말한
다)를 하고 신용정보와 해당 기
업 및 법인의 기술에 관한 정보

<신 설>

를 활용함으로써 그 판단의 결과
를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평점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 정
보, 그 기술의 가액 또는 평가의
견 등을 말한다.

⑰ 법 제2조제1호의6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약정,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및 지
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한 정보
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
기부 및 부속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3.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
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
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5.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
자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
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사항
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③ (생략)

<신설>

<신설>

고시하는 정보

6.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판단에 이용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신용조회기록

7.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관한 정보

8. 「상훈법」 및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9.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 같은 조 제1호의6 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⑮ (현행 제3항과 같음)

⑯ 법 제2조제8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기업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정보를 말한다.

⑰ 법 제2조제8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신 설>

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공시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방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㉑ 법 제2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 설>

㉒ 법 제2조제9호의2가목 부터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5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신 설>

㉓ 법 제2조제9호의2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호의3가목3) 및 같은 호 같은 목4)의 신용정보로서 별표5에 해당하는 정보

④ (생략)

<신설>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④ (현행 제4항과 같음)

②⑤ 제2조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
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
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
에 임원[이사, 감사, 집행
임원(「상법」 제408조의2
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
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
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
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
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
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
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
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
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
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
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
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
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
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
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
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
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
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
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
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
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
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

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
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
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
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
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
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
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
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신 설>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
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
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
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
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
외한다)

②⑥ 법 제2조제18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
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
임한 주주

2.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
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
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신 설>

제3조(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에 딸린 업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에 딸린 업무는 해당 업(業)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
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
다.

1. 부동산 및 동산의 임대차 현
황 및 가격조사업무
2.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
시스템 제공 및 구축 관련 자
문업무(채권추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업무

제4조(영업의 허가 신청) 법 제4
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삭 제>

제4조(영업의 허가 신청) -----
-----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
심업-----

-----.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신설>

-----.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대

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의 처리를 금지하는 것이 신용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2.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연합회 또는 중앙회만 말한다.

1. ~ 22. (생략)

23.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신설>

제6조(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질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

-----.

-----.

1. ~ 22. (현행과 같음)

23. -----
-----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

③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말한다.

제6조(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용조회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을 갖추
것

가. 상시고용인력에는 공인회
계사 또는 3년 이상 신용
조회업무(신용정보의 분석
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에 종사하였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명 이상이 포
함될 것

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
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
비를 갖추
것

2.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을
갖출
것

3. 삭 제

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
용평가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
을 갖추
것

가. 상시고용인력에는 공인회
계사 또는 3년 이상 개인
신용평가업무(신용정보 등
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
함한다)에 종사하였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명
이상이 포함될
것

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
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
비를 갖추
것

1의2. 법 제6조제2항제1호단서
가목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
가업을 하려는 경우(기업정보
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
회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세부
요건을 갖추
것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상의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 등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2.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상시고용인력에는 3년 이상 개인신용평가업무(신용정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였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포함될 것

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1의3. 법 제6조제2항제1호단서 나목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을 갖출 것

가. 상시고용인력에는 3년 이상 개인신용평가업무(신용정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였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이 포함될 것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 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 자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 주 또는 출자자

4.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

5. 임원의 임면 등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나 출자자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1의4.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을 갖출 것

가. 상시고용인력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3년 이상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무(신용정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였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명 이상이 포함될 것

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1의5.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을 갖

주주 또는 출자자

나.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

④ 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는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
다.

출 것

가. 상시고용인력에는 공인회
계사 또는 3년 이상 기업
정보제공업무(신용정보 등
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
함한다)에 종사하였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이 포함될 것

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
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
비를 갖추 것

1의6.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
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세부요
건을 갖추 것

가. 상시고용인력에는 공인회
계사 또는 3년 이상 기업
신용등급제공업무(신용정
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
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였
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명 이상이 포함될 것

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추는 것

1의7.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을 갖추는 것

가. 상시고용인력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3년 이상 기술신용평가업무(신용정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였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명 이상이 포함될 것

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추는 것

1의8.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및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을

갖출 것

가. 상시고용인력에는 공인회
계사 또는 3년 이상 기업
정보제공업무(신용정보 등
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
함한다)에 종사하였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5
명 이상이 포함될 것

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
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
비를 갖출 것

2.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을
갖출 것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
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처리
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
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를 갖출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상의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 등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
권추심업을 건전하게 하는 데
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법 제6조제1항제1의3호에 따
른 대주주는 별표1의 요건에 적
합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제1호가목4)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자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① 법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① 법

제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생략)

②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제9조(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 미만 보유자는 제외한다.

1. 신용조사회사(법 제4조에 따라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채권추심회사(법 제4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용조회회사(법 제4조에 따라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제8조제1항 -----

1. ·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제1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
-----<단서 삭제>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요출자자

나.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재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

<신 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이하 “금융관계 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령

③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 요건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반기(半期)가 지난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신 설>

④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
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4.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
계인인 주주로서 신용정보회
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1
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제2조제32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외한다.

5.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
국자산관리공사

6.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
연금공단

7. 회사의 합병·분할에 대하여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받은 신용정보
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신주를 배
정받아 대주주가 된 자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승인

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주식의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 취득등을 한 날부터 1개월

3.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에 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주주가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승인신청서 흠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신 설>

된 날부터 1개월

⑥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대주주가 되려고 신용정보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주식취득대상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취득계획

4. 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
인 경우

가. 정관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제표(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
우에는 해당 연도의 반기
재무제표)

다. 나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
고서 및 검토보고서

2.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가. 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및 「국가재정법」 제5조

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
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2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인 경우: 그 금
육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
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
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
무보증제한기업집단 또는
「은행법」에 따른 주채무
계열에 속하는 경우: 부채
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
법인의 확인서

3.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
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⑧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
서를 제출받은 -----

-----.

다만, 제2호 서류의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생략)

3.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
식 취득대상 신용정보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
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
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경우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
인이 국내 -----

2. (현행과 같음)

3. 주식취득대상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
권추심회사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⑨ -----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
----- 이내
에 -----

--. ----- 변경승인신청서에
흠결-----
-----.

⑩ 제9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
산할 때 변경승인신청서의 흠결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⑪ -----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
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
분 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 신청
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신 설>

에 따라 -----
----- 처
분대상 -----

---.

<삭 제>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
용평가회사”란 전문개인신용평
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
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
자자”란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동일인(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 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③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과 신용정보회사등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법률”이란 금융관계
법령을 말한다.

⑤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
나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의 건
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
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
한다.

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
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 · 인가 ·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
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
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
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
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한다.

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
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3년간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법 제2조제1호
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
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마. 최근 5년간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
산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
주로서 해당 기업을 회생
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이
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9조
의2제2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
상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적
격성 유지요건(이하 “적격성 유
지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
게 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이 충족하지
못하는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
용 및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
유

2. 향후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가능 여부

3. 적격성 심사대상과 해당 신
용정보회사등의 거래 관계

⑦ 법 제9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및 법 제9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의 주주 및 금융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2. 그 밖에 신용정보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⑧ 법 제9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적격성 심사대상의 법령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⑨ 법 제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이 해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5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최근 3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법 제2조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 된 경우

⑩ 금융위원회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등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은 10영업일 이내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회사등: 해당 신용정보회사등 또는 그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인 법인 등의 주주명부,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2. 적격성 심사대상: 주식예탁증

제10조(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 또는 분할이나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양도의 경우

가.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일 것
나.·다. (생략)

2. 양수·분할·합병의 경우

가. 신용정보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서, 주식실물 사본,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①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격성 심사 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신용정보업 등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 ① -----
-----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

1. -----

가. ---- 신용정보회사,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
나.·다. (현행과 같음)

2. -----

가.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나. (생략)

다. 사업의 양수·분할·합병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라. (생략)

② (생략)

제11조(겸업) 법 제11조제1항제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부채증명서의 발급 대행을 채
권추심회사에 의뢰한 경우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2. 외국인인 채권자가 부채증명
서의 발급 대행을 채권추심회
사에 의뢰한 경우

나. (현행과 같음)

다. -----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회사 또는 채
권추심회사-----

라.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겸영업무) ① 법 제11조제
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 전자문서중계 업무 및 「전
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
문서중계자의 업무
3. 금융 관련 법령 외의 법률에
서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
을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업무
(전문개인신용평가업에 한하
다)
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
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업무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
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
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사업(기
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
신용조회회사에 한한다)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
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화전문회사의 업무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한다)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한다)

4. 「발명진흥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발명의 분석·평가 업무

5.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업무

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7. 본인신용정보관리업

8. 금융 관련 법령 외의 법률에서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업무(기업정보조회업자에 한한다)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11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
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
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1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자문
업
3. 신용정보업
4.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 인가를 받아 영업 중인 금
융회사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허용된 고유·겸영·부대업무
5. 금융 관련 법령 외의 법률에
서 본신용정보관리회사가 허
가·인가 또는 등록 등을 통
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6.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업무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신 설>

여 고시하는 업무

제11조의2(부수업무) ①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 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4.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
5.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된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6. 금융회사 등의 위탁에 따른 연체사실 등의 통지 대행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허가 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 기획 등 업무
3. 허가 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4. 사업체 및 사업장 현황조사
5. 기업 및 법인의 유동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6.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조사, 분석, 연구, 컨설팅, 자문, 리서치 및 통계자료의 생성
7. 공개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8. 기업신용평가에 활용된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기업정보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9. 개인신용평점 및 그 밖에 개인신용평가결과에 관한 정보

는 제외한 정보로서 사업체의
실제 경영자 등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
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
하는 업무(기업정보제공업무
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11조의2제5항제3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허가 받은 신용정보업과 관
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
기획 등 업무

2. 허가 받은 신용정보업과 관
련된 연구·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11조의2제6항제4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무와 관

<신 설>

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
기획 등 업무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무와 관
련된 연구·조사 용역 및 상
담업무

4.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업무

제11조의3(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2.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
행정기관이 본인신용정보관리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마이데이터(MyDat
a)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12조(허가 등의 취소 유예)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신용정보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취소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정명령의 실익(實益)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경우

제12조(허가 등의 취소 유예) ---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

---. -----

-----.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12조의2(수집 및 처리의 원칙)

① 법 제15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때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말한다.

1.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대상 범위
2. 제1호로부터 추단되는 신용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목

제13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각 호의 자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보험업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수행하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적

3.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정보
처리의 형태
4. 수집 목적이 신용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5.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공개
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여부
6. 개인정보의 성질 및 가치와
이를 활용하여야 할 사회·경
제적 필요성

<삭 제>

따른 부수업무로서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신용카드회원에게 사망 또는
질병 등 특정 사고 발생 시 신
용카드회원의 채무(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과 관련된 채
무에 한정한다)를 면제하거나
그 채무의 상환을 유예하는
업무

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신관서가 수
행하는 보험업무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는 공제사업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

· 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

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

정한 업무 외에 제21조제2항
에 따른 금융기관이 금융소비
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
거나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
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4조(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
건을 갖춘 자”란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기업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
한 자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를 지정한 자
3.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의2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
자를 지정한 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제14조(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삭 제>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한 자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③ ~ ⑥ (생략)

<신 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제5조제2항-----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45조의3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과 제3자(이하 이 조에서 “결합의뢰기관”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에 따라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결합의뢰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정보집합물을 결합·제

공·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결합의뢰기관이 정보집합물을 데이터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 제공할 것

가. 하나의 정보집합물과 다른 정보집합물간에서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 연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결합키”라 한다)로 대체할 것

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할 것

2. 결합의뢰기관이 결합키를 생성하는 절차와 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결합의뢰기관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것

3. 결합의뢰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을 제공하거나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

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집합물의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전달할 것

4.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기 전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것

5.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하여 전달할 것

6.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한 후 결합한 정보집합물 및 결합전 정보집합물을 지체없이 삭제할 것

④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결합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는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

⑤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의뢰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정보집합물 결합·제공·처리·보관의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

②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
-----.

③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
----- “신용정보회사등”-----

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
록·변경·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
·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
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
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
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2.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
용정보 중 신용질서 문란행위
와 관련된 정보
3.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법원의 파산선고
· 면책·복권 결정 및 회생·
간이회생·개인회생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4. 제2조제1항제5호나목 및 다
목에 따른 채납 관련 정보
5.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납 관련 정보
6. (생략)

<신 설>

-----.

④ -----

-----.

1. 법 제2조제1호의4-----

2. 법 제2조제1호의4-----

3. 법 제2조제1호의6-----

4. 법 제2조제1호의6나목-----

5. 법 제2조제1항제1호의6아목-----

6. (현행과 같음)

⑤ 법제18조제2항제2호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⑤ · ⑥ (생략)

제16조의2(신용정보회사등의 기록보존)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 그 정보를 수집·이용한 자, 수집·이용한 날짜, 수집·이용한 정보의 내용 및 수집·이용한 사유와 근거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자, 제공한 날짜, 제공한 정보의 내용 및 제공한 사유와 근거
3.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그 정보를 폐기한 자, 폐기한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소멸시효완성, 채무 면제 등 거래 종료사유를 등록하기 위한 경우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삭제>

날짜, 폐기한 정보의 내용 및
폐기한 사유와 근거

제17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

2. 신용조회회사

3. (생 략)

③ (생 략)

④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정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
인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⑤ · ⑥ (생 략)

제17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
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
회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
사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신용정보의 관리·보호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란 제3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⑦ 법 제20조 제6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2.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제14호 및 제17호, 제19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3. 제21조제2항제4호, 제5호, 제8호, 제16호 부터 제18호, 제19호(전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한한다), 제22호 및 제23호의 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⑧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이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법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방법 등) ①·② (생략)
<신설>

③ 법 제20조의2제2항제3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위험관리체제의 구축과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

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기준과 서식에 따라 금융위
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2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명처리한 자가 가명
처리시 정한 기간을 말한다.

1. 추가정보 및 가명정보에 대
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수준
2. 가명정보의 재식별시 정보주
체에 미치는 영향
3.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4. 가명정보의 이용목적 및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 신
용정보주체에 대한 -----

형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5. (생략)

<신설>

④ ~ ⑦ (생략)

<신설>

<신설>

제18조(신용조회업 종사자의 결격
요건)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허
가·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
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
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 -----

--.

4. 5. (현행과 같음)

6.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
술의 특성 상 개인신용정보
삭제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성, 보안성 등을 해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보호 조치를 하
는 경우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제1절 신용정보업

제18조(신용조사업 종사자의 결격
요건) 법 제22조제2항제7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4. (생략)

제18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①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22조의 2에 따라 전년도에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업무내용을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에 해당 보고내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제18조의3(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신용
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
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신용평점을 유리하게 산
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
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를 맺거나 맺으려는 자의 개
인신용평점을 그 외의 자의
개인신용평점에 비하여 유리
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 취
급 행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의4제3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행
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전문개인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
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
로 개인신용평점을 유리하게

<신 설>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
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를 맺거나 맺으려는 자의 개
인신용평점을 그 외의 자의
개인신용평점에 비하여 유리
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 취
급 행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행위

제18조의4(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
사의 행위규칙) ① 법 제22조의
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사업
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계열회
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
로 신용평가 결과를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
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를 맺거나 맺으려는 자의 신
용평가결과를 그 외의 자의

신용평가결과에 비하여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 취급 행위

3. 개인사업자신용평가정보 또는 그에 활용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

4.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5.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6.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 등을 활용하여 유·무선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의5제3항제5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신용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
과 보관에 관한 사항

2.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
기 위한 내부절차 마련에 관
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
차·방법

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제한
사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4. 이해상충의 파악·평가와 관
리에 관한 사항(신용정보업과
겸영업무간 이해상충 행위 방
지, 신용정보업과 겸영업무 담
당 부서간 인적분리 등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신 설>

여 고시하는 사항

제18조의5(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① 법 제22조의6제2
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에 10
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2.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가 10
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3.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와 계
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하여 100분의
40 이상 출자한 법인
5. 그 밖에 신용평가업무와 관
련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
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22조의6제2항제1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신용
조회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신용평가 결과를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자의 기업신용평가결과를 그 외의 자의 기업신용평가결과에 비하여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 취급행위

3. 법 제22조의6 제1항제1호 또는 2호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업신용조회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다른 기업신용조회회사 간에 교차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4. 기업신용평가정보 또는 그에 활용된 정보 및 기업신용정보 등을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

5.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 상규를 초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
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
익을 제공받는 행위

6. 기업신용조회업의 수행과정
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
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
도록 하는 행위

7.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또는
특정 신용평가결과가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
급(신용등급의 범위를 포함한
다)에 대한 정보를 요청인 또
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
하는 행위

8. 신용평가계약의 체결을 유인
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이용
하는 행위

9. 의뢰자에 홍보자료, 유선·방
문설명 등을 통해 관대한 평
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
는 행위

10. 신용평가계약에 따른 대가
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

11. 은행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한
기술평가자의 직접적인 영업

행위

12. 기술평가자 대상 실적평가
등에 평가유치 실적 및 은행
방문 등의 영업요소를 포함하
는 행위

1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행위

③ 법 제22조의6제3항제5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신용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
과 보관에 관한 사항

2.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
기 위한 내부절차 마련에 관
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
차·방법

나. 불공정 행위, 금지 및 제한
사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신 설>

사항

4. 이해상충의 파악·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신용정보업과 겸영업무간 이해상충 행위 방지, 신용정보업과 겸영업무 담당 부서간 분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2조의6제4항에 따른 이용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법 제22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 대하여만 전송요구를 하도

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
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전송
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유
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
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
법보다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을 어렵게 하는 행
위를 포함한다)

3. 법 제39조의3 제1항의 권리
에 대한 대리행사를 강요하거
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4.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
의 변경 및 철회의 방법을 최
초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
다 어렵게 하는 행위

5.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
신에게 전송요구를 철회한다
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위약금 등 금전적, 경
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이

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
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행
위

8.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
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인신
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즉
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

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
이 보유한 개인인 신용정보주
체의 신용정보 삭제 방법을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10.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
의 없이 전송요구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용정보제공·이
용자등에게 신용정보주체 본
인이 전송요구한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행
위

11.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의9제2항에의 내부
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다.

③ 법 제22조의9제3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법 제22조의9제3항 각 호의 수
단이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위임·대리·대행·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용정보주체
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것을 말
한다.

1. 법 제22조의9제3항 각 호의
수단이나 정보(이하 “접근매
체”라 한다)를 직접 보관하는
방법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접근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을 확보하는 방법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
로 접근매체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을 사
실상 확보하는 방법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 부터 제21호의 자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4.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7.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9.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자

⑤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
다.

1. 행정안전부

2. 국세청

3. 관세청

4. 고용노동부

5. 보건복지부

6. 조달청

7. 공무원연금공단

8. 주택도시공사

9. 주택금융공사

10. 근로복지공단

11. 신용회복위원회

1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
단체조합

1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4.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
른 국민연금공단

1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자

⑥ 법 제22조의9제3항제2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
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
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또
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로
써 신용정보회사등이 본인확인
을 위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말
한다.

⑦ 법 제22조의9제4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제2항에 따른 방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만
족하는 방식을 말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
와 전송받는 자 사이에 미리
정한 방식

2.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
와 전송 받는자가 상호 식별
· 인증할 수 있는 방식

3.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
와 전송 받는자가 상호 확인
할 수 있는 방식

4. 정보 전송시 상용 암호화 소

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방식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⑧ 법 제22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 규모, 관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수, 시장 점유율, 외부 전산시스템 이용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22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3조의 중앙기록관리기관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으
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⑩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를 전송한 신용정보제
공·이용자 및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은 본인신용정보관리회
사는 전송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
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
송 받은 신용정보내역에 관한
기록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연 1
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법 제22조의9 제5항에 따라
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를 전송한 신용정보제공·이용
자는 중계기관이 기록 작성의무
를 진다.)

⑪ 법 제22조의9제7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은 이동권
행사대상 개인신용정보의 특성
및 처리비용, 요청한 개인신용
정보의 범위 및 양 등을 고려하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의 제공 요청 등) ① (생략)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제공 범위는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 설>

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다.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의 제공 요청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인증·인가·인정·지정·등록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③・④ (생략) ⑤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2. (생략) 3. <u>신용조회회사</u> <u><신설></u> <u><신설></u> 제2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u>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u>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 -----. 1. 제5조제2항제1호----- ----- 2. (현행과 같음) 3. <u>개인신용평가회사</u> 4. <u>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u> 5. <u>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 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 조회회사는 제외한다)</u> 제2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 ----- 제5조제2항 ----- -----
--	--

를 말한다.

<신 설>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
용) ① (생 략)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
관”이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
다.

1. ~ 15. (생 략)

1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7.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
식회사 국민행복기금

18. (생 략)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
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
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기관”이란 제5조제2항제1호---

--.

1. ~ 15. (현행과 같음)

1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
국자산관리공사

<삭 제>

18. (현행과 같음)

19. -----

----- 대부업자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대부업 범위에서 제외된
상법상 주식회사 등

20. ~ 2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③·④ (생략)

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 다. (생략)

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 간 또는 그 기관

20. ~ 23. (현행과 같음)

2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2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27.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2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5조제2항제1호-----

의 유형·업무특성 등에
따라 분류된 집단 간에 업
무집행의 중립성을 보장하
고 해당 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원의
구성에 관한 계획 및 업무
방법 등을 마련할 것

2. (생략)

⑥ 법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
설·설비 및 인력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상시고용인력에는 제2조제3
항제1호·제3호·제4호에 해
당하는 기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다
음 각 목의 금융 관련 단체에
서 3년 이상 신용정보 관련 업
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람 5명 이상이 포함될 것
가. 신용조회회사

<신 설>

<신 설>

<신 설>

2. (현행과 같음)

⑥ -----

-----.

1. (현행과 같음)

2. -----

----- 제5조제2항 -----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라. 기업신용조회회사

나. ~ 라. (생략)

⑦ ~ ⑨ (생략)

⑩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가 제9항에 따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를 교환할 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1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⑪ (생략)

제21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① 법 제2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집중관리하는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업무

2.·3. (생략)

② 법 제25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마. ~ 사. (현행 나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등급제공 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

⑪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① -----

---.

1.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한 정보로 제공하는 업무

2.·3. (현행과 같음)

② -----

-----.

1. · 2. (생략)

<신설>

<신설>

3. (생략)

제22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신설>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신용정보주체가 동의내역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2의3. 신용정보주체 식별,전송 요구 권리행사 현황 관리, 영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등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법 제22조의9 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을 포함한다.)

3. (현행과 같음)

제22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5조의2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의 업무

2. 이 영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업무

3. 그 밖에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① ~ ④ (생략)

<신설>

② ~ ⑤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신용평가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관련 민원처리 분석 결과 등에 관한 심의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6조의3제5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경영학·경제학·통계학 또는 법학 등을 전공하고 신용평가·개인정보 보호·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신용평가·개인정보 보호·금
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경험
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신용평가·개인정보
보호·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을 제외한 검증위원회
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심의를 반기별로 1회 실시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
른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신 설>

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은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위원회는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지체없
이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결과의 제출 및 통
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4(데이터전문기관) ① 법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정보집합물간의 결합과 가명
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대한
조사·연구 및 이와 유사한
업무

2. 정보집합물간의 결합과 가명
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표준화
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전문기관간 업무 표준

화 등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적정성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2. 신용정보회사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데이터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26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말한다.

1. 법 제26조4제4항제1호의 경

우 : 다음 각 목을 갖춘 위험
관리체계

가. 법 제24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동시에 수
행하지 아니할 것. 다만,
부서장 · 상무 · 이사 · 대
표자 등 업무의 집행을 지
시하거나 감독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
출 것

2. 법 제26조의4제4항제2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을 갖춘 위
험관리체계

가. 법 제26조의4제2항 각 호
의 업무(이하 “전문기관업
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직
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에 따른 다른 업무(이하
“다른 업무”라 한다)를 동
시에 수행하지 아니할 것.
다만, 부서장 · 상무 · 이사
· 대표자 등 업무의 집행
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문기관업무를 수행하는
서버와 다른업무를 수행하
는 서버를 별도로 분리할
것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
출 것

⑤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
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금
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
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
2호에 따른 법인 등기사항증명
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
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서류

⑥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

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법인일 것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자본금, 매출액 등
요건을 갖춘 법인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시설·설비 및 인력·조직,
재정능력을 갖추는 것

3. 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
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신
용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
기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
되어 있을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의4
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을 지정한 경우에는 데이터전문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
다. 고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에도 또한 같다.

1. 데이터전문기관의 명칭 · 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조건의 내용

⑧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재지정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의4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해산·폐업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0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
이터전문기관 업무를 부실하
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
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6.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
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⑩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은 지정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이 변경된 경우

3. 데이터전문기관의 운영권 또

제24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법 제2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14. (생략)

<신설>

<신설>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법 제3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

는 영업을 양도·양수하거나, 지분을 양도·양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금융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

-----.

1. ~ 14. (현행과 같음)

1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 설>

② (생 략)

③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제2항제1호-----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2. 제1항에 따른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자.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삭 제>

1.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추 두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

2.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삭제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② -----

---. -----

-----.

1. ~ 4. (현행과 같음)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④ (생략)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
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
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
공 동意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
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생략)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
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3.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개
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
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
의 특성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
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
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
으려는 자

3.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

-----.

-----.

1. ~ 4. (현행과 같음)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⑦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

-----.

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생략)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회사등과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회사등과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생략)

⑨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

⑧ -----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

-----.

1. (현행과 같음)

2. -----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

3. (현행과 같음)

⑨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

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생략)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

⑩ -----

-----.

1. (현행과 같음)
2. -----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3. -----
-----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4. -----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제2조
제9항 각 호-----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
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
회회사-----

5. -----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
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
회회사-----

6. -----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하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 받기 위한 목적

가.·나. (생략)

7.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⑪ 법 제32조제6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제29조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

----- 개인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 제공 하거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

가.·나.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
정보를 제공한 자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
대방에게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3.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를 이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
사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파
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
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

5.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
와 관련하여 금융질서를 문란
하게 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신 설>

⑫ 법 제32조제6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⑫ ~ ⑭ (생략)

<신설>

다른 위험 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2.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게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3. 「상법」 제726조의2의자동차보험계약의 제3자의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⑬ ~ ⑮ (현행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제2항제1호 부터 제20호의 자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9의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별표5에 따른 정보
2.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3.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공적 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4. 제18조의6제4항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료 납부정보 등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5. 그 밖에 제1호부터 4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정보

④ 법 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2. 「관세법」 제116조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4. 「전자정부법」 제42조

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7. 「외국환거래법」 제21조

8.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법률의 관련 규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

⑤ 법 제3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33조의2제6항제2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의 관련 규정”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0
조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19조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법률의
관련 규정으로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

⑦ 법 제33조의2제8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
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
구를 하였으나 제3자의 기망
이나 협박에 의하여 전송요구

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법 제33조의2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경우

5.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
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전송요구를 거
절하거나 정지·중단한 경우에
는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
공·이용자들은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법 제
33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행사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인 신용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특약사항
을 기재하거나 약정하여 해당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한 경우 또는 비대면 정보 조회를 금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대면으로 전송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⑩ 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들은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제공(다만, 최근 5년 내의 신용정보가 아닌 경우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정한 별도의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⑪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철회, 거절, 중지 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⑫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와 관련
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4(본인신용정보관리업및
전송요구의 운영 등) ① 금융위
원회는 법 제22조의9제7항에 따
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운영
에 관한 사항, 법 제33조의2제9
항에 따른 전송요구에 관한 사
항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
원하는 협의회, 기관 등을 둘 수
있다.

1.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신용정보의 범위, 개인신용정
보 규격 표준화, 검증 및 오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전송요구에 따른 비용 산정
에 관한 사항
3.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에 관
한 사항
4. 법 제22조의9제4항 및 법 제
3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
과 신뢰성이 보장된 방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개인신용정보 전송·관리를

제29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다음 각 호의 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

위한 신용정보주체 등의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6.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관리를 위한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기관 등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제29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2조제1호의2 가목의 정보를 말한다.

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
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
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
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신 설>

제29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
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동의 방
식이나 개인신용정보의 특성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전화 등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의 인터넷 홈
페이지 주소나 사업자 전화번호
등 동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
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17조
제6항제2호 부터 제4호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3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
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
다.

1.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
항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
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
조제2항 제1호 부터 제4호
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
조제3항 제1호 부터 제4호
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신 설>

2.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고지사항 전부를 별도로 요청
할 수 있다는 사실

3. 선택적 정보활용 동의 사항
의 경우,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정보활용 동의
등급

④ 법 제34조의2제3항단서에 따
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고지
사항 전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지사
항 전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⑤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
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는 사항은 축소하여 고지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29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①

법 제34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
보제공·이용자”란 제29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사항

2. 제5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
등급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4조의3제2항제4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글자 크기, 줄 간격 등을 확
대하는 등 정보주체가 읽기
쉽게 표기하였는지 여부

2.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고
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
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한
사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34조의3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의 등급 기준 변경, 법 제3
4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사항
의 변경 등 기준에 부여한 정
보활용 동의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신용정보주체 보호나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의 측면에서 불합리한 경우

2. 해당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해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3. 부여된 등급을 미표시, 왜곡 등 신용정보주체가 쉽게 인지하기 어렵도록 한 경우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의 선택적 동의 사항에 대해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정보활용 동의 등급 부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⑦ 금융위원회는 정보활용 동의 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

⑧ 제5항 및 7항에 따른 정보 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취소, 변경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
실의 조회 등) ① -----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하는 방법

가. (생략)

나. 신용정보회사

<신설>

<신설>

<신설>

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한다)

라.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마. 기업신용조회회사

사.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3호---

바. 제5조제2항제1호-----

-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 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한다)

2. (생략)

② ~ ⑨ (생략)

<신설>

2.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① 법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법 제2조제1호의3가목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

<신 설>

는 거래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종류

2.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여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3.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4. 그 밖에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0조의3(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① 법 제3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 기업 및 법인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3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2.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일정기간 그 기록이 보관된다는 사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

제31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2.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신용정보. 이 경우 같은 호 마목, 사목, 카목, 타목 및 파목의 신용정보는 제외하며, 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체납 관련 정보만 해당하고, 같은 호 자	는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면 2. 전화 3. 전자우편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비슷한 방법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기에 적합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제31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 ----- ----- -----. 1. 법 제2조제1호의4----- ----- 2. 법 제2조제1의6호 각 목의 신용정보. 이 경우 같은 호 라목, 마목, 사목의 신용정보는 제외하며, 아목에 신용정보는 제2조제17항제3호(체납관련 정보에 한한다.) 및 제5호, 제6호의
---	--

목 및 차목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정보 및 이와 비슷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만 해당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서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제1호의 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3.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다른 정보

<신설>

정보에 한한다.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

3.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

제31조의2(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나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의3가목 각각의 거래

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③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나 목괄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말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다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2항 각호의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 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⑤ 법 제36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정
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
회 이상 반복적으로 법 제36
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⑥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
케이션,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
식에 따라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
여야 한다.

⑦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법 제
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신용정보주체에
게 설명·정정·삭제 등 필요조
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 전자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
케이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안내하
여야 한다.

⑧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개인
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을 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설명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가
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요구 시점에
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자동
화평가의 결과로서, 개인신용
평가회사등이 자체적으로 정
한 신용등급 또는 점수(백분
율을 포함한다) 등으로 표시
할 수 있다.

2.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나
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
자동화평가지 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별(신용거래 판단정보, 신
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등) 반영 비중을 안
내하거나 또는 각 금융권역
협회에서 마련한 양식에 따라
안내할 수 있다.

3.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다
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
제4조에 따라 설명을 요구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 신

제33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등)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신설>

용정보원 및 신용조회회사 등
으로부터 금융회사 등이 직접
입수한 신용정보를 안내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기
초정보를 자체적으로 가공하
여 생성 또는 추론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⑨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법 제
36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인 신
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한 경
우 거절의 근거 및 판단근거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
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
내하여야 한다.

제33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신
용정보 범위에 속하는 개인신용
정보를 말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
5항단서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

<신 설>

제33조의2(신용조회회사의 정보
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 ①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38조의2

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용
정보회사 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처리결
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내용

3.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⑥ 법 제38조제6항 “보호위원회
가 지정한 자”란 「개인정보 보
호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지
정된 전문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3조의2(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
항 등)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또
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같은 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실로 인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도용됨으로써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그 밖의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제공의뢰자”라 한다)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의뢰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제공의뢰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신용조사회사는 법 제38조의 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④ 신용조사회사는 법 제38조의

----- “정보제공의뢰자”-----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1. ~ 6. (현행과 같음)

④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

2제3항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
체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
서 신용정보회사등에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사실이 발생함에 따
라 그 통지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회사등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무료 열람권) 법 제39조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한 기간”이란 4개월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사업자신용평가회사-----

-----.

-----.

제34조(무료 열람권) ① -----

-----.

②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개인신용평가회사”란 전문
개인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3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
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제1항제2호다목의 정보(자
동화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의 개요)

<신 설>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34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의3호가목에 따른 거래로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채무자가 되는 거래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의 취득·양도·양수 사실에 관한 정보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기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
보

④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채권자
변동정보를 제25조제1항에 따
라 집중관리·활용하는 정보(이
하 이 조에서 “집중관리정보”라
한다)와 분리보관하기 위해 채
권자변동정보와 집중관리정보
의 관리 기준, 접근 권한, 저장
공간 등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
여 운영하여야 한다. 보관 기준
및 접근권한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한다.

⑤ 채권자변동정보의 제공 및
열람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에 대해서는 채권자변동정보의
축적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비
용 등을 고려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채권자변동정보 교
부·열람 및 제공에 필요한 사
항은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제34조의3(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 법 제40조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나 방식을 말한다.

1. 전화
2.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문자·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생략)

제34조의2(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별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 및 절차) 법 제39조의3제1항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란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메신저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및 기간을 포함하여 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의4(개인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 ① -----
 --- 법 제39조의4제1항-----

 ----- 개인신용정보가 -----
 -----.

② ----- 법 제39조의4제3항 -----

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신용
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널
리 알려야 한다.

1. ~ 3.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
보 누설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
이 명백하고 법 제39조의2제2항
에 따라 누설된 신용정보의 확
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
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신용정보주
체에게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④ 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상의 신용정보”란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
정보를 말한다.

⑤ 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
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 개인
신용정보가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개인신
용정보 누설-----
----- 법 제39조의4제2항
----- 개인신용정보
의 -----

-----.

④ 법 제39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개인신용정보”란 -----

-----.

⑤ 법 제39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
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⑥ 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신용정보 회사등은 그 신용정보가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그 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을 알리고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제6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다만,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4항에 따른 보호위원회등을 말한다.

⑥ 법 제39조의4제3항 -----
----- 신용정보 회사등(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은 제외한다)-----

-----.

⑦ -----

---- 개인신용정보-----

-----.

⑧ 법 제39조의4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34조의5(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① 법 제40조의
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기술적·물리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통해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40조
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
행하고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파기 등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
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
치·운영에 관한 사항

2.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
기 위한 사항

3.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 취
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
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제3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란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 위반행위와

관한 사항 및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 접근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4. 가명처리전 개인신용정보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의 분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32조제6항9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적 외 활용 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의2 제5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기관명, 기간, 위탁하는 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전체 매출액”이란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사업부문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의 연평균 매출액(이하 이 조에
서 “연평균 매출액”이라 한다)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금액
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1. 2. (생략)

② ~ ⑤ (생략)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용
정보회사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생략)

제35조의4(의견제출) ① 금융위원
회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
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
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
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금융위원회(법 제45조의3제1
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
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
다.)-----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의4(의견제출) ① 금융위원
회(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
호위원회를 말한다.)-----.

② ----- 금융위원회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
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하여 과
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호

③ (생략)

제35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 (생략)

제35조의6(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① 법 제42조의2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위원회를 말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
-----.

② -----

--- 금융위원회(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6(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① -----
--- 금융위원회(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 “과징금납부의무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
공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
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
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
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35조의7(결손처분) 법 제42조의
2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과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금융위원회(법 제45조의
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
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
다.)---.

④ 금융위원회(법 제45조의3제1
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
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
다.)-----

-----.

1. ~ 3. (현행과 같음)

제35조의7(결손처분) -----
----- 금융위원회(법

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 6. (생략)

제35조의8(법정손해배상의 청구기간) ①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5조의9(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1. · 2. (생략)

<신 설>

<신 설>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35조의8(법정손해배상의 청구기간) ① -----

--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 받은 자-----
-----.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9(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채권추심회사

2의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 4. (생략)

제36조(신용정보협회의 업무) 법 제4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업무
2. 신용정보업 관련 교육업무 및 출판업무

3. (생략)

<신설>

4. (생략)

<신설>

3. · 4. (현행과 같음)

제36조(신용정보협회의 업무)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
-----.

1.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2.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교육 및 출판업무(관련 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

3. (현행과 같음)

4. 신용정보 관련 산업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표준 교재 제작 업무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6조의2(감독·검사 등)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제5

<신 설>

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
사 국민행복기금4. 「예금자보
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6조의3(금융위원회의 조치명
령권) ① 법 제45조의2제5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
구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 통보

5.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
았다는 사실의 공포명령 또는
게시명령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의2

<신 설>

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4(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조사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신용정보누설 등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를 말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5(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①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영 제17조제6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출받은 점검의 결과에 대한 내용 중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사항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점수 또는 등급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안전성 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인증마크의 부여를 위한 기준 등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의5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

제3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업무를 신용정보협회에 위탁한다.

<신 설>

<신 설>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 금융감독원장에게 -----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업무를 신용정보협회에 위탁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실태 점검 결과의 접수

2. 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점검 결과의 제출의 확인 및 그 결과의 접수 또는 등급 표시 및 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그 결과의 송부

<신 설>

<신 설>

② 금융감독원장 및 신용정보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의 공개

2. 법 제34조의3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및 취소
· 변경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의2제3항의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 및 법 제40조의2제4항의 익명처리의 적정성 인정업무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한다.

⑥ ----- 신용정보협회, 금융보안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제1항 부터 제5항-----.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금융감독원장 및 법 제39조의4제4항에 따른 보호위원회등-----

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2. 법 제9조에 따른 지배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신설>

3. (생략)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업 신고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겸업 승인에 관한 사무

<신설>

5.·6. (생략)

<신설>

7. (생략)

8. 법 제38조제4항·제5항·제7항에 따른 시정요청 처리에 관한 사무

<신설>

-----.

1. (현행과 같음)

1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에 따른 사무

2. ----- 대주주 -----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무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겸업 업무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11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 사무

5.·6. (현행과 같음)

6의2.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에 따른 사무

7. (현행과 같음)

8. 법 제38조제5항·제6항·제8항-----

8의2. 법 제39조의4제6항에 따

<신 설>

11. · 12. (생 략)

9.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0. (생 략)

② 신용정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

른 시정요구 처리에 관한 사무

8의3.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심사 및 인정업무에 관한 사무

8의4. · 8의5.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법 제4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45조의3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조사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45조의4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45조의5에 따른 상시평가제에 관한 사무

14.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
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금융거
래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채권
추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겸업 업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사무
<신 설>

3. 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
1항에 따른 임직원 채용·고
용 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③·④ (생 략)

<신 설>

<신 설>

-----.

1. ----- 신용
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 ----- 겸영업무

3. 법 제11조의2에 따른 부수업
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사
무

4. 법 제22조제1항·제2항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개
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를 통합하여 신용정보주체 본인
에게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
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
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
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u>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u>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u>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및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식별번호를 법 제22조의9제4항 및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여 그 개인의 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 기준) ----- <u>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가 부과 · 징수하는 -----.</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연 락 처	02 - 2100 -2621